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3년 7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에너지안전과장 조웅환 과장(2110-5441), 서동배 사무관(2110-5444)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사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7.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가스배관 매립 가능]**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문제가 많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외부노출 원칙 → (개정) 안전설치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

○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 **[가스 콘센트 설치 가능]**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 건물 바닥·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전기 콘센트와 유사)

○ 이사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 행	개 선
	

□ **[가스계량기 외부설치 유도]**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 (개정) 가스계량기를 계량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여 외부설치 유도, 내부설치시 원격디지털 표시기설치 등 외부검침 가능토록 조치

○ 이렇게 되면,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금지]**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개정) 액화가스안전관리 사업법에서 개방형 온수기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개방형온수기 설치를 금지토록 규정

○ 이로 인해, 욕실·미장원 등의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별첨: 규칙 개정 세부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서동배 사무관(☎ 02-2110-54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 국민과 기업 활동 불편 제도 개선

①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가스배관 시공시 사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

(현행) 건축물 내의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외부 노출 설치를 원칙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②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가 불분명하여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검침 시 세대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조정

(현행)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

(개정) 가스계량기는 계량 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③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와 가스도매사업자의 예비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사용자 압력조정기 : 매 3년마다 1회 이상 / 사업자 예비정압기 :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개정) 사용자 압력조정기 :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 사업자 예비 정압기 :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④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검사제도가 도입('12.2.8)됨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여 기록 보관하는 의무를 삭제

(현행) 도시가스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측정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

(개정) 도시가스사업자의 품질 자체측정 의무규정을 삭제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20년이상 경과된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하여 잠재된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현행)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음

(개정)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이상 1㎫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

②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는 설비의 설치·운영

(현행) 가스누출을 인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첨가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개정)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

③ 환기가 불량한 장소(욕실, 주방 등)에서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사용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CO중독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설치금지

(현행) 실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시키는 개방형온수기 설치 가능

(개정) 개방형 온수기의 사고 증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이 개정되어 동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 금지

④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변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현행) 터널식 굴착현장 주변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있어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음

(개정)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로 터널 최대 굴착단면의 0.6배 이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의 굴착공사를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추가